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4일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15일, 도병두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년 4월 2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및 제4조)
-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하영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2023. 3. 21. 지방자치법 개정(2023. 9. 22. 시행)에 따라 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운영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교섭단체의 정의(안 제2조)
- 나) 교섭단체의 구성(안 제3조)
- 다) 교섭단체의 기능(안 제4조)
- 라) 교섭단체의 지원(안 제5조)

3) 검토 의견

- 국회는「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경우,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 2023. 3. 21. 개정(2023. 9. 22. 시행)되어 교섭단체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2024. 4. 1.기준 전국 87개 (서울 17개 포함)에 달하는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 등을 규정하여 운영 중임.
- 우리구 의회에서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생 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